

제 출 서 류

신청인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2.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3. 본인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5.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공단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표등본 2.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하는 경우) 4. 보호종료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위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에 대한 위의 공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만 20세 이상 가구원 >

가구원1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가구원2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가구원3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가구원4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기재 요령】

1. 비정규직근로자 / 실업자 / 무급휴직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사업장에 비정규직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 실업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 4까지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제외한다.)
 -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2. ① 신청인 란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주소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훈련기관 개요 란에는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기관과 훈련기간, 훈련시간에 대해 기재합니다.
4. ③ 대부조건에서 신청개월수는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훈련기간 중 대부신청 개월 수를 기재하며, 총 대부금액은 신청개월 동안의 총 대부금액을, 월별대부금은 총 대부금액 중 월별 지급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상환조건을 선택합니다.
 - ※ 상환조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200만원 이내입니다.
 - ※ 월 최소 신청액은 50만원 이상을 기재하고,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5. ④ 실업자인 신청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기재합니다.
6. ⑤ 비정규직 근로자 및 ⑥ 무급휴직자인 신청자는 소속 사업장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⑦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는 연소득 금액을 기재하고, 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자 선발, 월별 분할대부에 따른 직업훈련 계속참여 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할 항목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이력, 대부 대상훈련여부 및 직업훈련 참여이력(출석, 수료, 중도탈락), 실업급여 수급여부, 사업자등록 이력 여부, 소득금액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상환조건에 따라 최대 10년)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사업평가 업무 수행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정부재정사업 이종수혜방지 및 사업평가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대부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대부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